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Contents

제1장 /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1
제2장 /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5
제3장 /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5~2019년)	15
■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사례 건수	17
■ 연도별 학대사례 건수	18
■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19
■ 연도별 재학대 건수	20
■ 연도별 신고자 유형	21
■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23
■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24
■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25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25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27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28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29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31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32
■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34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35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개요



발간목적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음
- 지난 5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는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였음
-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와
 -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 활동 자료를 분석하였음



➔ 자료수집 과정

- 본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으로서 취약노인통합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임

➔ 자료분석

-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음.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내용

-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 류	내 용
연도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건수 • 학대사례 건수 • 일반사례 건수 • 재학대 건수 • 신고자 유형 • 전체 상담횟수 • 일반상담 횟수 • 학대상담 횟수 • 학대발생장소 • 사례판정 현황 •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학대행위자 연령대 • 학대유형 건수 •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호노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소노인 및 입소하지 않고 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노인 모두를 의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일반상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안내 등의 문의 및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되었으나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을 의미함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복지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적 치료 서비스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행위자

-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 노인학대 신고

▣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상담 및 신고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 된 사례로 당해 연도(2019년) 외에 과년도 사례가 포함되어 있음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 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현장조사

-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초의 방문을 의미함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노인학대 사례

학대사례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일반사례

-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 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노인학대 유형

▣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가구형태
☐ 노인단독가구

-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노인부부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손자녀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치매건강상태

☑ 치매진단

-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5~2019년)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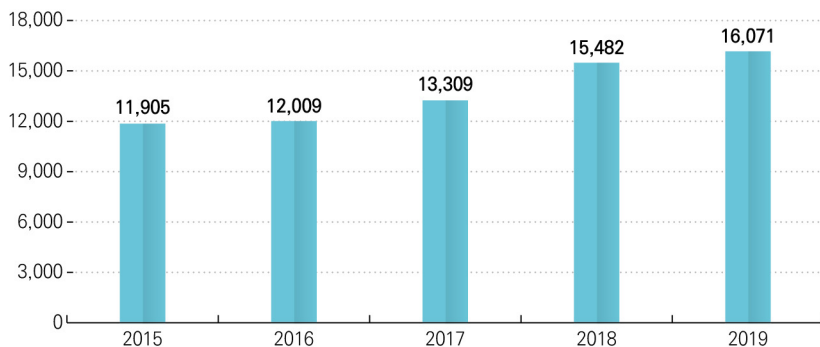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사례 건수

-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 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19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6,071건으로 2015년 대비 약 35.0% 증가(11,905건 → 16,071건) 하였음

[표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사례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증감률	-	0.9	10.8	16.3	3.8



[그림 1] 연도별 전체 신고사례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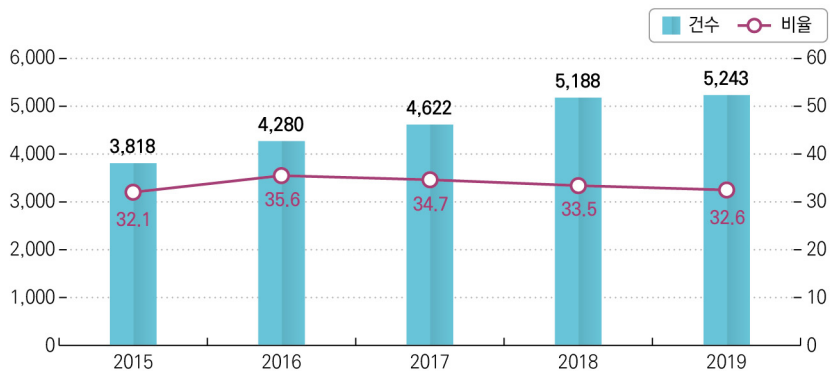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사례 건수

- 학대사례¹⁾의 경우 전체사례의 30~40% 수준이며 2015년 대비 약 37.3% 증가(3,818건 → 5,243건) 하였음

[표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대사례	3,818	4,280	4,622	5,188	5,243
	32.1	35.6	34.7	33.5	32.6
증감률	-	12.1	8.0	12.2	1.1



[그림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학대사례)

1)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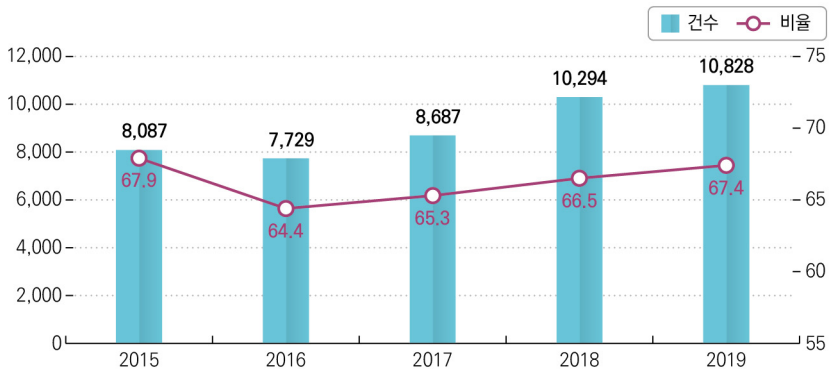
연도별 일반사례 건수

- 일반사례²⁾는 전체사례의 60~70% 수준이며 2015년 대비 약 33.9% 증가(8,087건 → 10,828건) 하였음

[표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사례	8,087	7,729	8,687	10,294	10,828
	67.9	64.4	65.3	66.5	67.4
증감률	-	-4.4	12.4	18.5	5.2



[그림 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일반사례)

- 2) 일반사례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정된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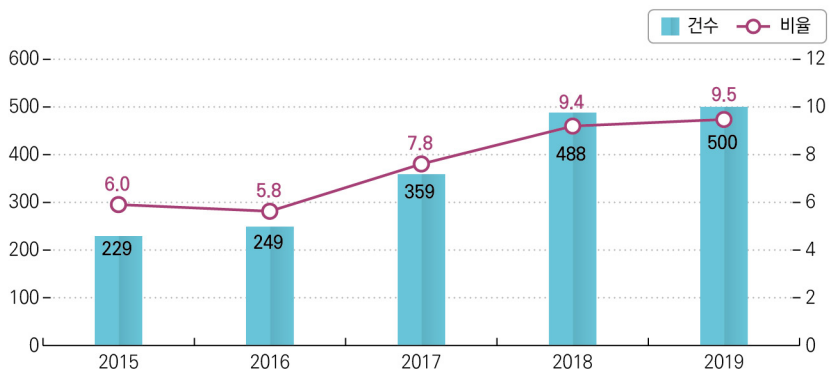
연도별 재학대 건수

-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9.5%로 나타남

[표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대사례 건수	3,818	4,280	4,622	5,188	5,243
재학대	건수	229	249	488	500
	비율	6.0	5.8	7.8	9.4
증감률	-	8.7	44.2	35.9	2.5



[그림 4]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019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5년 대비 약 24.0% 증가 (707건, 18.5% → 877건, 16.7%) 하였음
- 2019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83.3%이고, “타인”(259건, 4.9%)의 신고 비율이 2018년의 타인(156건, 3.0%) 비율보다 1.9%p 증가한 반면, “학대피해노인 본인”(358건, 6.8%)과 “친족”(386건, 7.4%), “관련기관”(3,358건, 64.0%) 등의 신고 비율은 감소함

[표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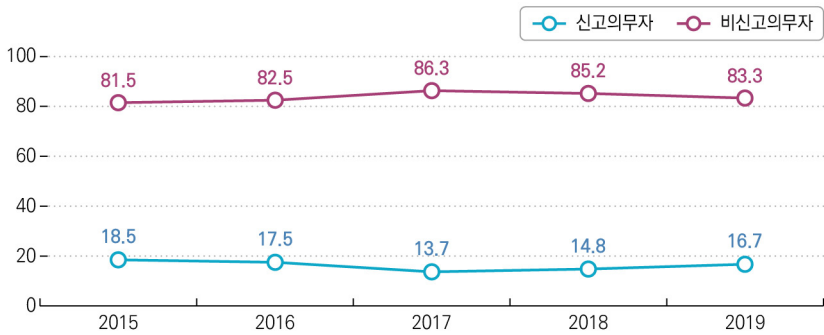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4	27	20	26	24
		1.2	0.6	0.4	0.5	0.5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9	12	21
		-	-	0.2	0.2	0.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78	168	153	194	225
		4.7	3.9	3.3	3.7	4.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노인)관련 종사자	16	2	2	1	3
		0.4	0.0	0.0	0.0	0.1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101	79	105	72	83
		2.6	1.8	2.3	1.4	1.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90	382	283	398	375
		7.6	8.9	6.1	7.7	7.2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31	44	18	12	17
		0.8	1.0	0.4	0.2	0.3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8	45	34	29	24
		1.0	1.1	0.7	0.6	0.5
신 고 의 무 자	구급대 대원	9	3	5	2	2
		0.2	0.1	0.1	0.0	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1	2	-	-
		-	0.0	0.0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1	1
		-	-	-	0.0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	4	5	9
		-	-	0.1	0.1	0.2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	5	66
		-	-	-	0.1	1.3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5	18
		-	-	-	0.1	0.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5	9
		-	-	-	0.1	0.2
	소계	707	751	635	767	877
		18.5	17.5	13.7	14.8	16.7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본인	722	582	431	387	358
		18.9	13.6	9.3	7.5	6.8
	학대행위자본인	8	4	6	4	5
		0.2	0.1	0.1	0.1	0.1
	친족	567	500	407	472	386
		14.9	11.7	8.8	9.1	7.4
	타인	320	236	755	156	259
		8.4	5.5	16.3	3.0	4.9
	관련기관 ³⁾	1,494	2,207	2,388	3,402	3,358
		39.1	51.6	51.7	65.6	64.0
	소계	3,111	3,529	3,987	4,421	4,366
		81.5	82.5	86.3	85.2	83.3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3) 관련기관에는 어르신 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포함됨



[그림 5]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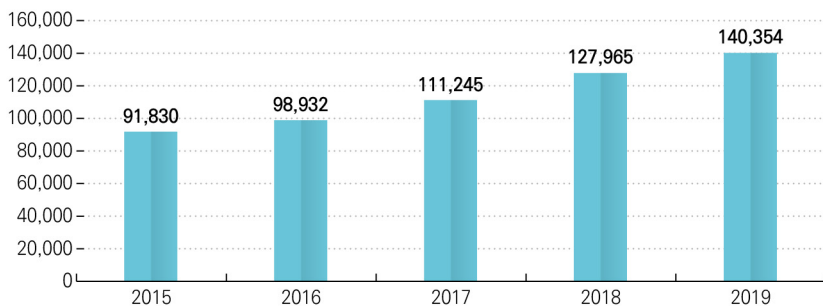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 전체 상담횟수는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을 합한 것으로 **학대상담**이란 신고 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일반상담**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노인학대와는 관련 없는 노인문제로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한 상담을 의미함
 - 전체 상담횟수는 2015년 대비 약 52.8% 증가(91,830회 → 140,354회) 하였음

[표 6]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및 증감률

(단위: 회,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상담횟수	91,830	98,932	111,245	127,965	140,354
증감률	-	7.7	12.4	15.0	9.7



[그림 6] 연도별 전체 상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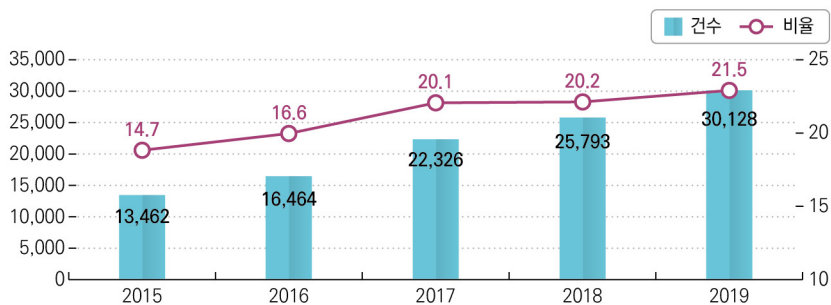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 일반상담의 경우 2015년 대비 약 6.8%p 증가(13,462회 → 30,128회) 하였으며, 전체 상담횟수의 21.5%의 비율을 보임

[표 기]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상담	13,462	16,464	22,326	25,793	30,128
	14.7	16.6	20.1	20.2	21.5
증감률	-	22.3	35.6	15.5	16.8



[그림 7] 연도별 일반상담 횟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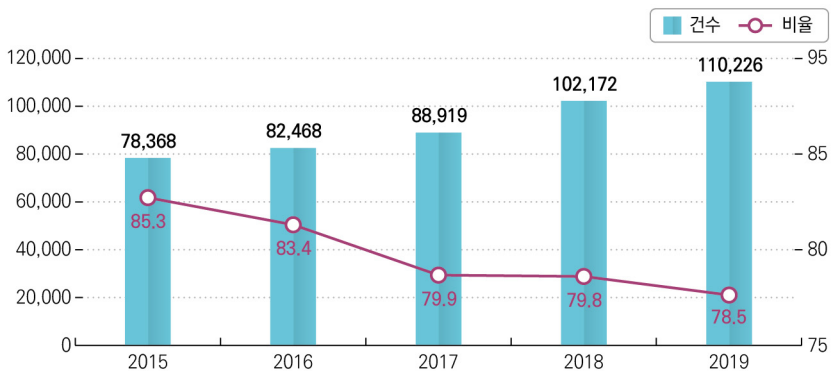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 학대상담의 경우 2015년 대비 약 40.7% 증가(78,368회 → 110,226회) 하였으며, 전체 상담횟수의 78.5%를 차지함

[표 8]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대상담	78,368	82,468	88,919	102,172	110,226
	85.3	83.4	79.9	79.8	78.5
증감률	-	5.2	7.8	14.9	7.9



[그림 8] 연도별 학대상담 횟수 및 비율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2019년 4,450건(8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생활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486건(9.3%)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 하였으며(380건 → 486건), 이용시설 학대의 경우 2019년 131건(2.5%)으로 전년 대비 219.5% 증가함.(41건 → 13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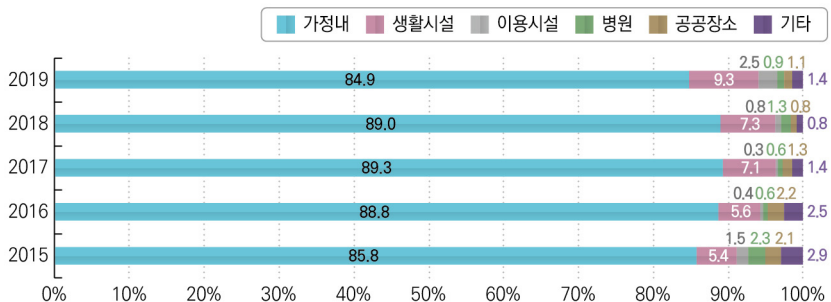


[표 9]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내	3,276	3,799	4,129	4,616	4,450
	85.8	88.8	89.3	89.0	84.9
생활시설	206 ^{주1)}	238 ^{주1)}	327 ^{주1)}	380 ^{주1)}	486 ^{주1)}
	5.4	5.6	7.1	7.3	9.3
이용시설	57	16	16	41	131
	1.5	0.4	0.3	0.8	2.5
병원	88	24	27	65	45
	2.3	0.6	0.6	1.3	0.9
공공장소	80	94	58	42	60
	2.1	2.2	1.3	0.8	1.1
기타	111	109	65	44	71
	2.9	2.5	1.4	0.8	1.4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9년)



[그림 9]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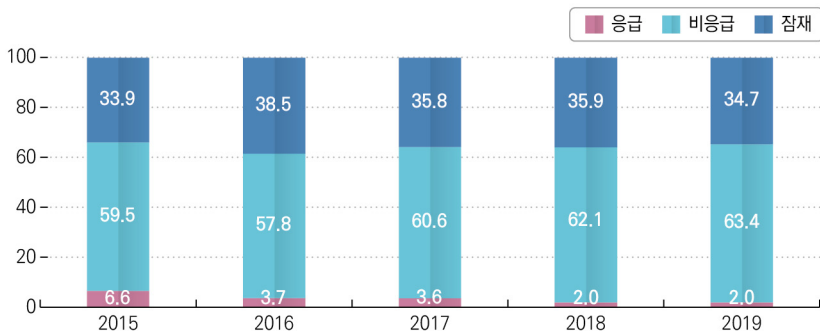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판정 유형을 살펴보면 응급 사례의 경우 2015년 이후 약 58.6%(251건 → 104건) 감소하였음.
- 비응급 사례는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잠재 사례는 2015년부터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표 10]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응급	251	159	165	105	104
	6.6	3.7	3.6	2.0	2.0
비응급	2,271	2,472	2,803	3,221	3,322
	59.5	57.8	60.6	62.1	63.4
잠재	1,296	1,649	1,654	1,862	1,817
	33.9	38.5	35.8	35.9	34.7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그림 10]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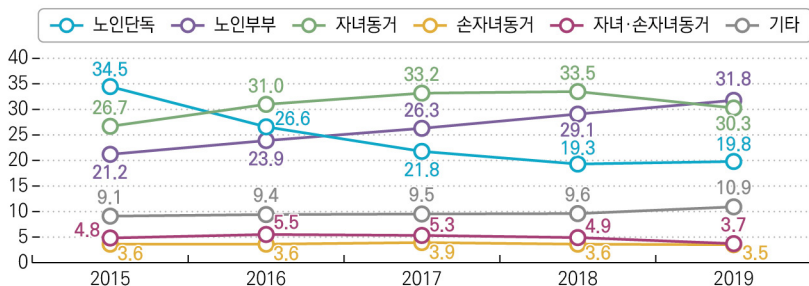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노인단독⁴⁾가구는 2015년에 30% 내외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인 반면, 노인부부는 2015년 대비 10.6%p(21.2% → 31.8%) 증가함

[표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단독	1,318	1,140	1,007	999	1,039
	34.5	26.6	21.8	19.3	19.8
노인부부	808	1,023	1,216	1,512	1,669
	21.2	23.9	26.3	29.1	31.8
자녀동거	1,021	1,328	1,536	1,738	1,588
	26.7	31.0	33.2	33.5	30.3
손자녀동거	139	154	178	187	182
	3.6	3.6	3.9	3.6	3.5
자녀·손자녀동거	185	234	245	252	195
	4.8	5.5	5.3	4.9	3.7
기타	347	401	440	500	570
	9.1	9.4	9.5	9.6	10.9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그림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4) '노인단독 가구'라 함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를 의미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대피해 노인의 “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배우자” 유형이 2순위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 학대행위자 유형('19년) : 아들(31.2%), 배우자(30.3%), 기관(18.5%), 딸(7.6%) 순
 - ** 배우자 비율 추이 : 24.8%('17년) → 27.5%('18년) → 30.3%('19년)
-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학대행위자가 “본인”이 되는 비율이 2015년 622건(14.7%)에서 2019년 200건(4.2%)으로 67.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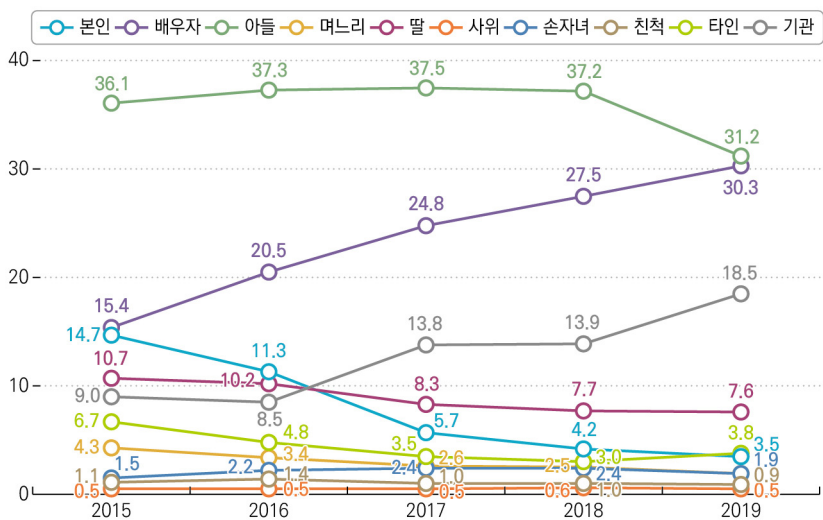
[표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인	622	522	290	240	200
	14.7	11.3	5.7	4.2	3.5
배우자	652	952	1,263	1,557	1,749
	15.4	20.5	24.8	27.5	30.3
아들	1,523	1,729	1,913	2,106	1,803
	36.1	37.3	37.5	37.2	31.2
며느리	183	157	131	143	109
	4.3	3.4	2.6	2.5	1.9
딸	451	475	424	436	438
	10.7	10.2	8.3	7.7	7.6
사위	21	23	27	34	27
	0.5	0.5	0.5	0.6	0.5
손자녀	64	103	124	134	112
	1.5	2.2	2.4	2.4	1.9
친척	46	63	49	59	50
	1.1	1.4	1.0	1.0	0.9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타인	283	221	176	168	222
	6.7	4.8	3.5	3.0	3.8
기관	379	392	704	788	1,067
	9.0	8.5	13.8	13.9	18.5
계	4,224	4,637	5,101	5,665	5,777
	100	100	100	100	100



[그림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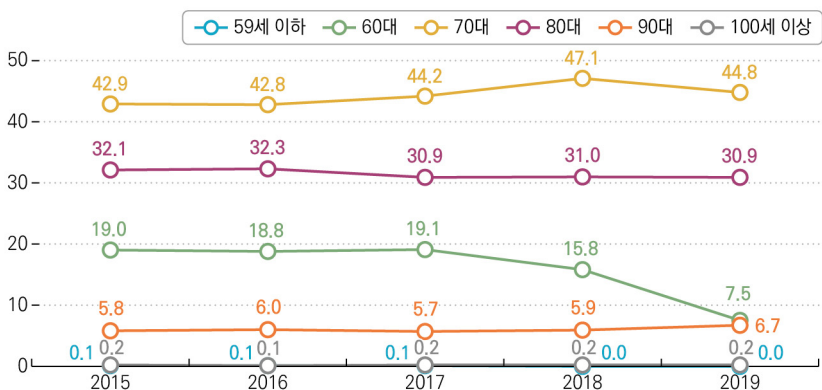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19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를 보면, 70대 학대피해노인 비율은 1.9%p 증가(70대 42.9% → 44.8%)한 반면, 80대는 1.2%p (32.1% → 30.9%) 감소하였음

[표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9세 이하	3	5	4	-	-
	0.1	0.1	0.1	-	-
60~64세	204	213	141	-	-
	5.3	5.0	3.1	-	-
65~69세	524	589	740	819	919
	13.7	13.8	16.0	15.8	7.5
70~74세	771	852	969	1,193	1,189
	20.2	19.9	21.0	23.0	22.7
75~79세	865	978	1,071	1,250	1,157
	22.7	22.9	23.2	24.1	22.1
80~84세	770	881	900	1,020	1,031
	20.2	20.6	19.5	19.7	19.7
85~89세	456	499	525	588	586
	11.9	11.7	11.4	11.3	11.2
90~94세	163	206	204	245	289
	4.3	4.8	4.4	4.7	5.5
95~99세	56	53	58	61	63
	1.5	1.2	1.3	1.2	1.2
100세 이상	6	4	10	12	9
	0.2	0.1	0.2	0.2	0.2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그림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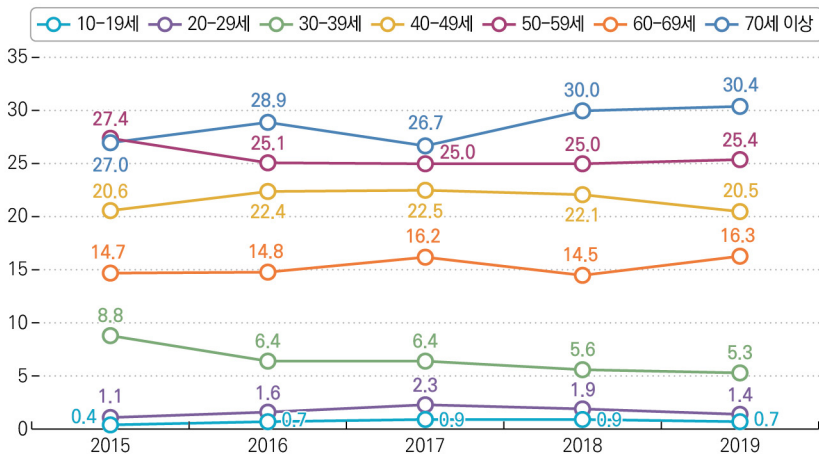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40~50대 중년층의 학대행위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40~50대 학대행위자 추이 : 48.0%(15년) → 45.9%(19년)
- 2019년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1,759명(30.4%)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465명(25.4%), 40대가 1,184명(20.5%)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는 7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19세	18	33	46	50	42
	0.4	0.7	0.9	0.9	0.7
20~29세	46	76	115	105	81
	1.1	1.6	2.3	1.9	1.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0~39세	372	296	325	318	306
	8.8	6.4	6.4	5.6	5.3
40~49세	870	1,040	1,150	1,253	1,184
	20.6	22.4	22.5	22.1	20.5
50~59세	1,156	1,166	1,275	1,414	1,465
	27.4	25.1	25.0	25.0	25.4
60~69세	622	687	827	824	940
	14.7	14.8	16.2	14.5	16.3
70세 이상	1,140	1,339	1,363	1,701	1,759
	27.0	28.9	26.7	30.0	30.4
계	4,224	4,637	5,101	5,665	5,777
	100	100	100	100	100



[그림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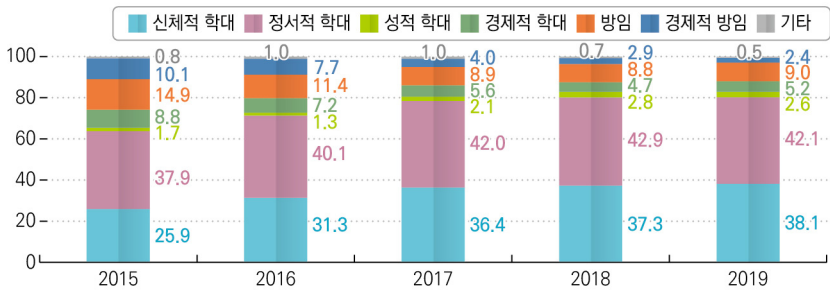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 - 신체적 - 방임” 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남
 - * 학대유형건수('19년) : 정서적 학대 3,465건(42.1%), 신체적 학대 3,138건(38.1%), 방임 741건(9.0%), 경제적 학대 426건(5.2%), 성적학대 218건(2.6%), 자기방임 200건(2.4%), 유기 41건(0.5%)의 순
- 경제적 학대의 경우 전년대비 11.8% 증가('18년 381건 → '19년 426건)
- 자기방임의 경우 전년대비 16.7% 감소('18년 240건 → '19년 200건)

[표 15]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체적 학대	1,591	2,132	2,651	3,046	3,138
	25.9	31.3	36.4	37.3	38.1
정서적 학대	2,330	2,730	3,064	3,508	3,465
	37.9	40.1	42.0	42.9	42.1
성적 학대	102	91	150	228	218
	1.7	1.3	2.1	2.8	2.6
경제적 학대	542	491	411	381	426
	8.8	7.2	5.6	4.7	5.2
방임	919	778	649	718	741
	14.9	11.4	8.9	8.8	9.0
자기방임	622	523	291	240	200
	10.1	7.7	4.0	2.9	2.4
유기	48	66	71	55	41
	0.8	1.0	1.0	0.7	0.5
계	6,154	6,811	7,287	8,176	8,229
	100	100	100	100	100



[그림 15] 연도별 학대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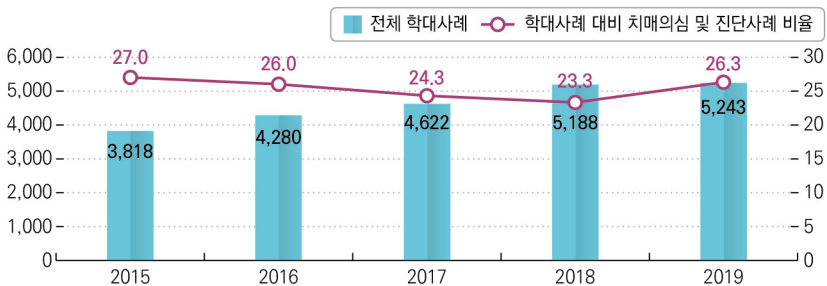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를 진단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2015년 대비 약 34.1% 증가(1,030건 → 1,381건) 하였음.

[표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의심 및 치매 진단사례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학대사례		3,818	4,280	4,622	5,188	5,243
치매정도	치매의심	561	593	488	507	550
	치매진단	469	521	634	700	831
	계	1,030	1,114	1,122	1,207	1,381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27.0	26.0	24.3	23.3	26.3



[그림 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의심 및 치매 진단사례 현황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인 쇄 일 : 2020년 6월

발 행 일 : 2020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집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